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07

발의연월일: 2024. 12. 9.

발 의 자 : 염태영 · 복기왕 · 김준혁

박정현 • 민병덕 • 김남근

박 정ㆍ이해식ㆍ안태준

박홍근 · 손명수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경호가 필요한 시기와 장소를 협소하게 제약하고 있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 당시 국회 경비대는 국회 본회의 출석을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 국회 직원들의 출입을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 는 상황이 벌어졌음.

국회 경호는 국회 경위와 정부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로 구분되어 있어 행정부의 일탈로 인한 국회와 정부의 대립상황 발생시 국회가 아닌 행정부의 지시에 따르게 됨으로써 국회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게 됨.

이에 의장의 경호권을 회기 중에 국회 안에서 행사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평소에도 국회 안팎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경찰공무원으로 파견되는 국회경비대를 국회로 이관하여 경비대 로 운영하되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명시하여 경위는 회의장 안을, 경비대는 회의장 밖의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143조, 제144조제1항 및 제3항).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 중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국회의 질서"로,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를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경위(警衛)"를 "경위(警衛)와 경비대(警備隊)"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호업무"를 "경위와 경비대(제2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로, "수행하되"를 "경호업무를 수행하되"로, "경찰공무원"을 "경비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의장은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	<u>국회의 질서</u>		
기 위하여 <u>국회 안에서 경호권</u>	<u>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u> .		
을 행사한다.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u>경위</u>	<u>경위</u>		
(警衛)를 둔다.	(警衛)와 경비대(警備隊)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경호업무</u> 는 의장의 지휘를	③ 경위와 경비대(제2항에 따		
받아 <u>수행하되</u> , 경위는 회의장	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을 포함		
건물 안에서, <u>경찰공무원</u> 은 회	<u>한다)</u>		
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u> 경호업무를 수행하되</u>		
	<u>경비대</u>		